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대 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영간섭 금지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도모하고,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영활동 간섭 세부 유형 신설(안 제11조의2)

- 1)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법률상 금지되는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을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에 대한 선임·해임 및 이들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 결정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의 판

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 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함

3)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함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안 제23조)

- 1) 법률 개정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협의회의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하도록 함
- 3) 이를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안 [별표 1])

- 1)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서는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함

3) 이를 통해 범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6. ~ 11. 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에 대한 선임·해임 및 이들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 결정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 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③ 협의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진행한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조정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 2. 9.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u> <u>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지</u> <u>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u> <u>1.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이나 그</u> <u>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u> <u>인력에 대한 선임·해임 및</u> <u>이들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u> <u>건 결정 등에 대해 대규모유</u> <u>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u> <u>얻게 하는 행위</u> <u>2. 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u> <u>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u> <u>제한하는 행위</u> <u>3.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u> <u>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u> <u>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u> <u>4.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u> <u>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u> <u>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u> <u>하는 행위</u> <u>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u> <u>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u> <u>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u>

제23조(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섭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23조(소제기 등의 통지) ① ---

----- 경우 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③ 협의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u><신 설></u> [별표 1] 2. 과징금 산정기준 (생 략) 가. (생 략)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 정·조사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 여 <u>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u>	<u>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진행 한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조 정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u> [별표 1] 2. 과징금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에 따른 조정 ----- ----- - <u>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 거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감 경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961